

상가 임대차계약서

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(갑) 을 “갑”이라 칭하고, 임차인을 “을”이라 칭하여,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【임대차목적물의 표시】

1. 임대호수 : 경단센트럴타워 106, 107호
2. 임대점포 면적
 - 1) 전용면적 : 203.52㎡
 - 2) 공용면적 : 17.86㎡
 - 3) 면적합계 : 221.38㎡
3. 용 도 : 음식업 푸드코트
4. 업 종 : 서비스
5. 임대보증금 : 일금 오천만원(W 50,000,000)
6. 월 임대료 : 일금 육백만원(W 6,000,000)
7. 임대차기간 : 5년

제 2 조 【임대보증금】

1. “을”은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기일에 “갑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- 1) 계약금 : 일금 오백만 원정 (W 5,000,000), 계약 시 지급
 - 2) 잔 금 : 일금 사천오백만 원정 (W 45,000,000), 입주 시 지급
2. “을”은 잔금을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“갑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- 1) 은 행 : 기업은행
 - 2) 예금주 : 주식회사 금
 - 3) 계좌번호 : 957-011515-01-013
3. “갑”의 직원은 임대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, “을”이 제2항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인정받을 수 없다.
4. “을”은 임대차 기간동안 임대보증금을 “갑”에게 예치하여야 하며, 그 예치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.
5. 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 후 “을”은 이 임대차목적물을 “갑”에게 명도하고 “갑”은 그 명도일 후 30일 이내에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 중 “을”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“을”에게 반환한다. 또한 “을”의 변제충당 순서는 원상복구비, 임대료, 관리비, 제세공과금의 순으로 공제(연체료, 과태료 포함) 한다.
6. “을”은 임대보증금으로 관리비 기타 제비용에 충당할 수 없으며, 반환청구권을 타 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.
7. “을”이 제1항의 임대보증금의 지급기일을 지체할 때에는 “을”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5%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“갑”에게 지급하여야 하고, “갑”은 연체료, 임대보증금의 순으로 변제 충당한다. 단, 이 연체료는 “갑”에게 전액 귀속되며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.

제 3 조 【임대료】

1. “을”은 월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“갑”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선급하여야 한다.
(매월 5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)

임대차계약서

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(주) 을 "갑"이라 칭하고, 임차인을 "을"이라 칭하여,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【임대차목적물의 표시】

1. 임대호수 : 검단센트럴타워 109호, 110호
2. 임대점포 면적
 - 1) 전용면적 : 319.44㎡
 - 2) 공용면적 : 28.03㎡
 - 3) 면적합계 : 347.47㎡
3. 용 도 : **음식업** *한식 뷔페.*
4. 업 종 : 서비스
5. 임대보증금 : **일금 일억원(W 100,000,000)**
6. 월 임대료 : **일금 일천만원(W 10,000,000)**
7. 임대차기간 : 5년

제 2 조 【임대보증금】

1. "을"은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기일에 "갑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- 1) 계약금 : 일금 일천만 원정 (W 10,000,000), 계약 시 지급
 - 2) 잔 금 : 일금 구천만 원정 (W 90,000,000), 입주 시 지급
2. "을"은 잔금을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"갑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- 1) 은 행 : 기업은행
 - 2) 예금주 : 주식회사 금
 - 3) 계좌번호 : 957-011515-01-013
3. "갑"의 직원은 임대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, "을"이 제2항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인정받을 수 없다.
4. "을"은 임대차 기간동안 임대보증금을 "갑"에게 예치하여야 하며, 그 예치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.
5. 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 후 "을"은 이 임대차목적물을 "갑"에게 명도하고 "갑"은 그 명도일 후 30일 이내에 "을"이 "갑"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 중 "을"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"을"에게 반환한다. 또한 "을"의 변제총당 순서는 원상복구비, 임대료, 관리비, 제세공과금의 순으로 공제(연체료, 과태료 포함) 한다.
6. "을"은 임대보증금으로 관리비 기타 제비용에 충당할 수 없으며, 반환청구권을 타 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.
7. "을"이 제1항의 임대보증금의 지급기일을 지체할 때에는 "을"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5%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"갑"에게 지급하여야 하고, "갑"은 연체료, 임대보증금의 순으로 변제 총당한다. 단, 이 연체료는 "갑"에게 전액 귀속되며 "갑"이 "을"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.

제 3 조 【임대료】

1. "을"은 월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"갑"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선급하여야 한다.
(매월 5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)

상가 임대차계약서

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 함에 있어 임대인 (췍금) 을 "갑"이라 칭하고, 임차인을 "을"이라 칭하여,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【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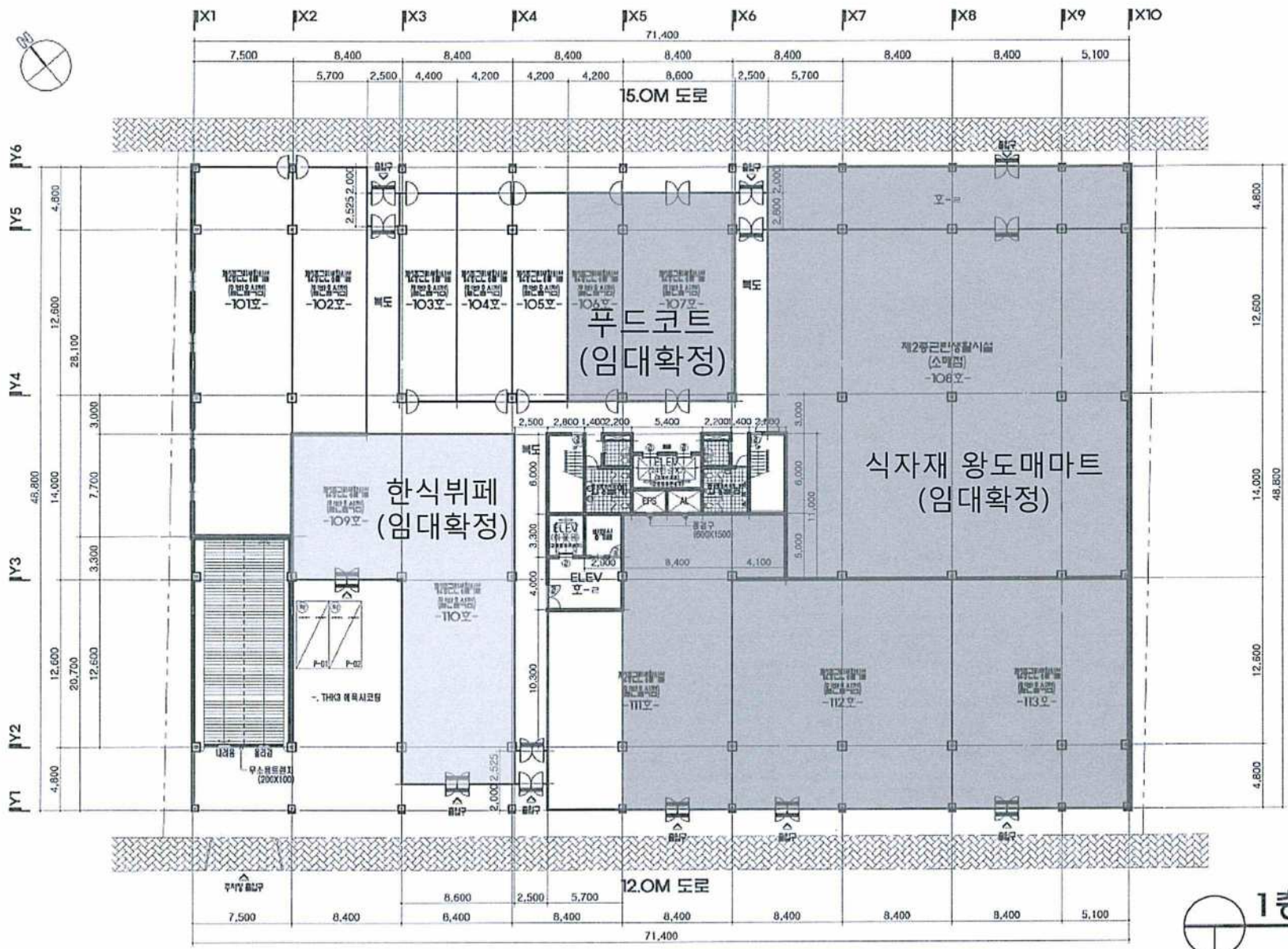
1. 임대호실 : 경단센트럴타워 108호, 111호, 112호, 113호
2. 임대점포 면적
 - 1) 전용면적 : 1,540.70㎡
 - 2) 공용면적 : 183.28㎡
 - 3) 면적합계 : 1,723.98㎡
3. 용 도 : 식자재도매상가
4. 업 종 : 유통
5. 임대보증금 : 일금 삼억원(W300,000,000)
6. 월 임대료 : 일금 사천만원(W 40,000,000)
7. 임대차기간 : 5년

제 2 조 【 임대보증금 】

1. "을"은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기일에 "갑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- 1) 계약금 : 일금 삼천만 원정 (W 30,000,000), 계약 시 지급
 - 2) 잔 금 : 일금 이억칠천만 원정 (W270,000,000), 입주 시 지급
2. "을"은 잔금을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"갑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 - 1) 은 행 : 기업은행
 - 2) 예금주 : 주식회사 금
 - 3) 계좌번호 : 957-011515-01-013
3. "갑"의 직원은 임대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, "을"이 제2항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은 인정받을 수 없다.
4. "을"은 임대차 기간동안 임대보증금을 "갑"에게 예치하여야 하며, 그 예치기간 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.
5. 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 후 "을"은 이 임대차목적물을 "갑"에게 명도하고 "갑"은 그 명도일 후 30일 이내에 "을"이 "갑"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 중 "을"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"을"에게 반환한다. 또한 "을"의 변제충당 순서는 원상복구비, 임대료, 관리비, 제세공과금의 순으로 공제(연체료, 과태료 포함) 한다.
6. "을"은 임대보증금으로 관리비 기타 제비용에 총당할 수 없으며,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.
7. "을"이 제1항의 임대보증금의 지급기일을 지체할 때에는 "을"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5%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"갑"에게 지급하여야 하고, "갑"은 연체료, 임대보증금의 순으로 변제 총당한다. 단, 이 연체료는 "갑"에게 전액 귀속되며 "갑"이 "을"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.

제 3 조 【 임대료 】

1. "을"은 월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"갑"에게 당월 분 임대료를 선급하여야 한다.
(매월 5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)



1층 평면도
축척 : 1/300